

제170회(정례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1면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3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별	예 산 규 모			비 고
	예 산 액	기정예산	간주처리	
합 계	223,653,917	219,250,987	4,402,930	
일 반 회 계	186,447,379	182,154,449	4,292,930	
특 별 회 계	37,206,538	37,096,538	110,000	
의료급여기금	81,394	41,394	40,000	
주차장	37,125,144	37,055,144	70,000	

II. 세입 간주처리 - 총 8회(106건), 4,402,93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기 금
합 계	(106건) 4,402,930	(3건) 2,880,000	(4건) 796,987	(35건) △1,715,755	(63건) 2,328,857	(1건) 2,841
일 반 회 계	(104건) 4,292,930	(3건) 2,880,000	(4건) 796,987	(35건) △1,715,755	(61건) 2,328,857	(1건) 2,841
특 별 회 계	의료급여 기 금	(1건) 40,000	-	-	(1건) 40,000	
	주 차 장	(1건) 70,000	-	-	(1건) 70,000	

III.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 명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9	2,567,500	9	2,567,500		-
시민행정위원회	6	477,500	6	477,500		-
재무건설위원회	3	2,090,000	3	2,090,000		-

IV. 검토의견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236억 5,391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4억 293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억 9,293만원이 증가한 1,864억 4,737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1천만원 증가한 372억 653만 8천원입니다.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6건에 4억 7,750만원입니다.
-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검토한 바, 보조금 교부지연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이므로 명시이월의 취지 및 요건에는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향후 예산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보다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V.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